2013.3.25 제226章 Weekly

이슈

재보험금 지급 분쟁에서 공동운명원칙 적용 예외를 인정한 최근 판결

포커스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도입 3년. 평가와 과제

금융보험 해설

금융상품의 이해 (18): 부채담보부증권(CDO) (3)

글로벌 이슈

중국의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과 시사점 키프로스 구제금융안의 영향과 시사점

금융시장 주요지표





재보험금 지급 분쟁에서 공동운명원칙 적용 예외를 인정한 최근 판결

송윤아 연구위원

요인

- 과거 원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는 보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상호 간 장기적 우호 차원에서 최대 신의성실 원칙에 근거하여 공동운명조항을 적용하거나 적절한 합의로 해결해 왔음.
 - 공동운명조항은 재보험회사가 해당 재보험계약상 모든 사항에 있어 원보험회사가 처리하는 조치(특히, 보험금 지급)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으로 계약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하나의 원칙으로 간주됨.
 - 재보험계약서상 공동운명조항은 원보험회사에 대한 재보험회사의 보상의무 범위를 정함에 결정적인 해석기준이 되고 있음
- 그러나 재보험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로 인해 재보험계약 당사자 간 최대 신의성실 원칙을 이행할 유인이 작아짐에 따라 보상책임 범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잦아지고 있음.
 - 분쟁을 초래하는 재보험시장 환경 변화에는 구체적으로 첫째, 재보험시장 진입과 퇴출이 빈번해짐에 따라 재보험계약 당사자들은 과거에 비해 평판에 덜 구애받는 경향이 있음.
 - 둘째, 보험영업 수익성이 감소하면서 재보험계약 당사자 간 반복적인 거래관계 유지 가능성이 낮아짐.
 - 셋째, 원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의 존재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거대손실의 경우 최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이익이 장기적인 거래관계로부터 기대되는 이익보다 커짐
- 최근 미국 뉴욕항소법원은 공동운명조항 적용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이례적으로 원보험회사의 보험금 및 합의금 산정기준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원보험회사가 정한 보상범위에 대해 재보험회사의 이외제기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뉴욕항소법원은 원보험회사는 마치 재보험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조치하는 것과 동등한 분별력과 사리를 보여주어야 할 의무, 즉, 최대 신의성실 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재확인함.
- 이러한 맥락에서 재보험금 회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원보험회사는 공동운명조항 적용에 있어서 재보험계약 당사자 간 보상범위 기준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함.
 - 나아가 현 재보험관련 상법규정들이 재보험계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제시하여 줄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1. 검토배경



- **패** 재보험계약 당사자 간 보상책임 범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잦아지고 있음.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BestRe라는 말레이시아 재보험회사가 한화손해보험의 핸드폰 분실보험을 90% 수재하였으나 재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채무 부존재 소송을 제기함.1)
 - BestRe는 보상과정에서 통신대리점이 차익을 얻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으나, 2012년 12월 말레이시아 현지법원은 채무 부존재 패소(즉, 한화 승소) 판결을 내림.
- 재보험회사의 무익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재보험계약에는 일반적으로 공동운명조항(Follow—the—fortune clause)이 있으며, 이는 재보험회사가 해당 재보험계약상 모든 사항에 있어 원보험회사가 처리하는 조치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임.
 - 공동운명조항은 원보험회사에 대한 재보험회사의 보상의무 범위를 정할 때 결정적인 해석기준이되고 있으며. 계약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하나의 원칙으로 간주되고 있음.2)
- 그런데 최근 미국 뉴욕항소법원은 공동운명조항 적용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이례적인 판결을 내림.
 - United States Fid. & Guar. Co. v American Re-Insurance Co.에서 뉴욕항소법원은 원보험회사는 마치 재보험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조치하는 것과 동등한 분별력과 사리를 보여주어야 할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원보험회사가 정한 보상범위에 대해 재보험회사의이의제기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즉, 재보험계약 당사자 간 이해 상충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동운명조항 적용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줌.

¹⁾ 이태경(2012. 12. 19), 『한화손해보험 기업분석 보고서』, 현대증권.

²⁾ 장덕조(2000), 『Follow the fortune 조항의 법적 고찰』, 보험학회지. 영미의 최근 판례는 비록 공동운명조항이 계약서 내용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재보험계약에는 당연히 적용되는 하나의 원칙으로 판단하고 있음.

III 이에 본고에서는 United States Fid. & Guar. Co. v American Re-Insurance Co. 사건의 발단이 된 원보험 계약 및 소송, 사건의 쟁점, 판결의 의의를 살펴보고자 함.

2. 공동운명조항 관련 소송의 전개



■ 재보험특약에서 공동운명조항 적용에 있어 원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의 이해상충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여기에서는 해당 사건(United States Fid. & Guar. Co. v American Re-Insurance Co.)의 발전과정을 상세히 기술하도록 함.

가. 원보험 계약 및 소송

- - Western Asbestos는 석면 관련 제품을 유통하는 업체로, 석면으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1948~1959년 기간 동안 USF&G에서 제공하는 13개의 종합손해배상책임보험(제조물책임보험 포함)에 가입함.³⁾
 - 원보험계약에서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액(limit of liability)이 20만 달러이고 원보험회사의 총 보상한도⁴⁾가 없기 때문에 석면 피해자 수에 따라 총보상액이 무제한적으로 증가할 수 있음.
 - Western Asbestos는 1967년 MacArthur에 인수되었으며, 석면 피해자들이 MacArthur에 손해 배상소송을 제기함
 - 1993년 MacArthur는 Western Asbestos에 제조물책임보험을 제공한 USF&G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원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 첫째, USF&G는 MacArthur가 아닌 Western Asbestos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전자는 후자소유 증권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³⁾ 제조물책임보험(product liability insurance)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등이 부담하는 배상책임의 손해를 보험사가 보상하여 주는 것임.

⁴⁾ 총보상한도(aggregate limit)는 보험기간 중에 보상할 총보상한도를 정하여 매 사고마다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부분은 보상하지 않는 방식을 말함.

- 둘째, Western Asbestos와 USF&G 모두 보험증권을 분실하였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지만, 발행 시점의 표준 증권은 제조물배상책임담보를 제공하지 않음,
- 셋째, 해당 증권이 제품배상책임담보를 포함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해당 증권은 총액보상한도를 가지고 있을 것임.
- USF&G는 보험금 지급소송에서 패할 위기에 처하였으며, MacArthur에 대한 석면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을 적극적으로 방어⁵⁾·배상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인 선의와 공정거래(implied covenant of good faith and fair dealing)'를 위반한 것에 대해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궁지에 몰리게 됨.⁶⁾
 - 1997년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MacArthur가 Western Asbestos의 보험증권을 통해 보호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결하였으나, 전 Western Asbestos 임원이 MacArthur에 보험권리를 양도한다고 서명함으로써 항소법원의 판결이 번복됨.
 - 또한 Western Asbestos의 전 임원은 USF&G의 분실된 증권이 총보상한도가 없는 제조물책임배 상담보를 제공한다는 증거를 제시함.
 - 이에 MacArthur은 USF&G가 MacArthur에 대한 석면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을 적극적으로 방어·배상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묵시적인 선의와 공정거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음.
 - 묵시적인 선의와 공정거래의무 위반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있을 경우 USF&G는 보험증권에 명시된 담보범위에 상관없이 MacArthur의 모든 석면 관련 손해액에 책임을 져야 함.
 - USF&G는 MacArthur의 손해배상책임 전체에 대해서 보험을 제공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 1인 당 최고 20만 달러를 제공하는 증권을 발행함.
 - 2002년까지 접수된 MacArthur의 총 손해액은 이자를 제외하고 14억 달러로 추정됨.
- 글국 2002년 USF&G는 현재 · 미래의 모든 석면 관련 인적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9억 7,500만 달러를 MacArthur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동 합의금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산정됨.

⁵⁾ 책임보험의 경우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고로 인적·물적 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 보험회사는 이를 방어할 의무가 있음.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방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선의 및 공정거래 의무위반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추가적 책임을 질 수 있음(Nontrose Chem. Corp. v. Superior Court; Cal. 1993). 만약방어의무 불이행이 사기적이거나 가혹한 것이거나 혹은 악의적인 것이라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Silberg v. California Life Ins. Co.; Cal. 1994).

⁶⁾ 보험계약에서는 계약 당사자들로 하여금 계약 혜택을 받을 타방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구하는 묵시적인 선의와 공정거래 의무가 있음. 보험회사의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선의의무 위반행위는 묵시적인 계약상 의무 위반 및 불법행위(bad faith tort)가 되며 그로 인한 청구권자의 모든 손해가 보상될 수 있음. 그러한 손해에는 경제적인 손해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손해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추가적인 손해에 더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도 함.

- 첫째, 보험증권에 명시된 담보범위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USF&G의 악의적 행위에 대한 보상은 합의금에 포함하지 않음.
- 둘째, 현재·미래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질병별 피해자 1인당 합의금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음: 중피종(mesothelioma) 20만 달러, 폐암 20만 달러, 그 외 암 2만 달러, 석면증(asbestosis) 5만 달러, 흉막비후(pleural thickening) 2만 달러임.
- 셋째. 현재·미래의 손해배상청구는 1959년에 발행된 증권을 토대로 보상함.
 - 1959년은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액이 20만 달러로 가장 높은 해였음.

나. 재보험 계약 및 소송

- 1945년부터 USF&G는 American Re와 초과손해액재보험특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에서 USF&G의 피해자 1인당 보유액은 10만 달러이며 원보험계약과 마찬가지로 재보험회사의 사고당 총보상한도가 없음.
 - 초과손해액재보험특약(Excess of Loss Reinsurance)에서 출재사는 미리 정해진 일정손해액(보유 액)까지만 책임을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재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계약형태로서 소액사고 의 경우 재보험회사에 유리하며 대형사고 시 재보험회사에 불리함.
 - USF&G는 자사의 보유액을 점진적으로 증대시켰는데 기간별 USF&G의 보유액은 다음과 같음: 1945~1951년 5만 달러, 1951~1956년과 1956~1962년 10만 달러, 1962~1975년 50만 달러, 1975~1980년 100만 달러
 - 재보험계약에 의하면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액이 20만 달러이고 USF&G 보유가 피해자 1인당 10만 달러이기 때문에 피해자 1인당 재보험회사의 최대 부담액은 10만 달러임.
 - 원보험 계약과 마찬가지로 재보험특약도 사고당 총보상한도가 없기 때문에 재보험회사는 피해자 수에 상관없이 모든 피해자에 대해서 최대 10만 달러를 보상해야 함.

⁷⁾ United States Fid. & Guar. Co. v American Re-Insurance Co. 2013 NY Slip Op 00784.

● USF&G는 합의금 중 3억 9.100만 달러를 재보험회사로부터 회수하고자 하였으며 또 다른 재보험 회사인 ECRA는 USF&G와 합의하여 재보험금을 지급하였음.

손해배상청구 소송 석면제조업체 석면 피해자 (MacArthur) 제조물책임보험 : 피해자 1인당 보 상한도 20만 달러 초과손해액 재보험특약 재보험회사 : 출재사 보유액 10만 달러 원보험회사 (American Re) (USF&G)

〈그림 1〉 원보험계약과 재보험계약 구조

3. 사건의 쟁점과 판결의 의의



가. 사건의 쟁점

- 일반적으로 합의금 산정기준에 따라 재보험계약 당사자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데. American Re는 USF&G가 합의금 산정기준을 자사에 유리하게 설정함으로써 재보험회사의 부담이 부당하게 많 아졌다고 주장함.
- ₩ 구체적으로 첫째. 보험증권상 담보범위에 해당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 뿐 아니라 USF&G의 악의적 행 위에 대한 보상(bad faith claim)이 합의금에 고려됐을 개연성이 있으며 후자는 재보험계약의 담보범위 를 벗어나는 것임.
 - 원보험자의 불법적인 행위는 재보험계약의 담보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따라서 재보험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함.
 - 즉. 원보험자가 보험금청구를 처리함에 악의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징벌적 책임을 부과당했을 때 재보험회사는 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 그러나 USF&G의 악의적 행위에 대한 보상이 합의금에 포함되었을 것이라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음.

- 2002년 합의에 이르기 직전 MacArthur는 합의금 제안 시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준하는 금액을 합의금에 포함시킨 바 있음.
- 또한 폐암 환자에 대한 합의금이 비합리적으로 높게 책정되었는데 USF&G의 악의적 행위에 대한 보상이 폐암 환자의 합의금에 암묵적으로 포함되었을 개연성이 있음.
- 합의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USF&G, MacArthur, 피해자)는 USF&G의 악의적 행위에 대한 보상을 합의금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합의하였으나. 이들은 모두 담합의 유인이 있음.

둘째, 각 질병에 책정된 합의금의 타당성 및 형평성이 부족하며, 이러한 질병별 합의금 구성으로 인해 재보험회사의 부담이 부당하게 늘어남.

- USF&G는 폐암환자에게 1인당 최고지급한도인 2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석면증에 대해 5만 달러. 흉막비후에 대해 2만 달러. 기타 암에 대해 2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함.
- 그러나 피해자가 MacArthur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 측 전문가는 폐암에 대한 MacArthur의 배상책임을 피해자 1인당 9만 1,174달러로 추정한 바 있는데, 최종 합의금이 피해 자 측 전문가가 추정한 금액의 2배 이상인 것은 이례적임.
- American Re는 폐암에 대한 1인당 합의금이 비합리적으로 높고 타 질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가 USF&G의 악의적 행위에 대한 보상을 재보험회사에 부담지우기 위함이라고 주장함.
 - 만약 각 질병에 대해 합의금이 달리 책정되었다면, 예를 들어 폐암이 10만 달러, 석면증이 10만 달러, 흉막비후가 4만 달러, 기타 암이 4만 달러로 책정되었다면, 10만 달러 초과 손실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재보험특약거래 하에서 재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
- 재보험이 없었더라도 각 질병에 대해서 상기와 같은 질병별 합의금이 책정되었을 지가 사실상의 쟁점임.
- - 만약 석면피해자가 여러 증권연도에 걸쳐 비례적으로 배분되었다면,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청구권이 많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재보험회사의 주장임.
- 요컨대. 이 사건에서 USF&G와 American Re 간 쟁점은 합의금 산정기준(즉, allocation)의 문제임.
 - 보상범위, 질병별 보상한도, 기준 증권연도 등 합의금 산정기준에 따라 USF&G와 American Re 의 보험금 지출액이 달라짐.

나. 판결의 의의

- 2013년 2월 7일 뉴욕항소법원은 American Re의 첫 두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심법정(trial court)에서 보다 심층적인 사실심리를 통해 USF&G가 마치 재보험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조치하는 것과 동등한 분별력과 사리를 보였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힘.
 - 원보험회사의 합의금 산정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한, 재보험회사는 공동운명조항에 의거하여 원보험회사가 정한 보상범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⁸⁾
 - 합리성이란 원보험회사가 마치 재보험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조치하는 것과 동등한 분별력과 사리를 보이는 것을 의미함 9)
 - 뉴욕항소법원에 따르면 합리성은 원보험회사 자신의 이익을 무시하거나 재보험회사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여러 합리적인 옵션이 있는 경우 원보험회사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쪽으로 합의금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음.¹⁰⁾
 - USF&G의 악의적 행위에 대한 보상이 합의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¹¹⁾과 질병별 합의금 수준¹²⁾ 이 과연 재보험계약이 없었더라도 그러했을 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실심리가 필요함.
 - 그러나 뉴욕항소법원은 USF&G가 전체 손실을 1959년에 발행된 단일 증권에 할당하는 것은 캘리 포니아 법에 의해 허용될 뿐 아니라, 특정 연도를 선택하라고 했다면 MacArthur는 당연히 보상 한도가 가장 높고 가장 많은 피해자가 있었던 1959년을 선택했을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 격을 제시함 13)

⁸⁾ United States Fid. & Guar. Co. v American Re-Insurance Co. 2013 NY Slip Op 00784: "In sum, under a follow the settlements clause like the one we have here, a cedent's allocation of a settlement for reinsurance purposes will be binding on a reinsurer if, but only if, it is a reasonable allocation, and consistency with the allocation used in settling the underlying claim does not by itself establish reasonableness."

⁹⁾ Ibid., "We mean by "reasonable" essentially what we take the Third Circuit to mean by "legitimate": The reinsured's allocation must be one that the parties to the settlement of the underlying insurance claims might reasonably have arrived at in arm's length negotiations if the reinsurance did not exist."

¹⁰⁾ Ibid., "We conclude, however, that the cedent's motive should generally be unimportant. When several reasonable allocations are possible, the law, as several courts have recognized, permits a cedent to choose the one most favorable to itself. But the choice must be a reasonable one, ..."

¹¹⁾ Ibid., "In short, we find it impossible to conclude, as a matter of law, that parties bargaining at arm's length, in a situation where reinsurance was absent, could reasonably have given no value to the bad faith claims. This issue must be decided at trial."

¹²⁾ Ibid., "Whether the values assigned to lung cancer, asbestosis, pleural thickening and other cancer claims could reasonably have been agreed on in arm's length bargaining in the absence of reinsurance presents an issue of fact."

¹³⁾ Ibid., "As to the allocation of all losses to the 1959 policy year, summary judgment in USF & G's favor was properly granted."

- - 이 판결에 따라 재보험회사는 원보험회사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공동운명조항을 적용할 필요가 없으며, 합의금 산정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 재보험회사는 공동운 명조항의 적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비록 재보험회사가 원보험회사의 운명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 재보험회사는 공동운명조항의 적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① 원보험회사가 영업상의 이유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 그것을 재보험회사에 구한 경우, ② 원보험회사가 보험금청구를 처리함에 악의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징벌적 책임을 부과 당하였을 때 그것을 재보험회사에 구한 경우, 14) ③ 원보험회사의 보험금 및 합의금 산정기준이 비합리적인 경우
 -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에 원보험자의 징벌적 책임에 대해 재보험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는데 재보험회사가 원보험자의 방어 전략에 관하여 묵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재보험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음.

4. 결론 및 시사점



- 과거 원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는 보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상호 간 장기적 우호의 차원에서 최대 신의성실 원칙에 근거하여 공동운명조항을 적용하거나 적절한 합의로 해결해 왔음.
- 그러나 재보험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로 인해 재보험계약 당사자 간 장기적 우호관계 유지의 중요성과 최대 신의성실 원칙을 이행할 유인이 작아짐에 따라 보상책임 범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잦아지고 있음.
 - 분쟁을 초래하는 재보험시장 환경 변화에는 구체적으로 첫째, 재보험시장 진입과 퇴출이 빈번해짐에 따라 재보험계약 당사자들은 과거에 비해 평판에 덜 구애받는 경향이 있음.
 - ⊚ 둘째. 보험영업 수익성이 감소하면서 재보험계약 당사자 간 반복적인 거래관계 유지 가능성이 낮아짐.

¹⁴⁾ 장덕조(2000), p. 65. California Unfair Claims Practice Act(Insurance Code ss 790.03(h)) (5)하에서 원보험자의 악의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책임은 없다고 하였음.

- 셋째, 원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의 존재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거대손실의 경우 최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이익이 장기적인 거래관계로부터 기대되는 이익보다 커짐.
- 이러한 맥락에서 재보험금 회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원보험회사는 공동운명조항 적용에 있어서 마치 재보험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조치하는 것과 동등한 분별력과 사리를 보여야 할 것임.
- 나아가, 현 재보험관련 상법규정들이 재보험계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제시하여 줄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15)
 - 재보험에는 여러 쟁점이 존재할 수 있으나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원보험회사가 보험 금을 지급하였을 때 재보험회사가 어느 범위에서 보상책임을 부담하는가 하는 것임. kiqi

¹⁵⁾ 장덕조(2000)는 재보험에 대한 상법규정이 3개의 조문에 불과하고 이 규정들이 재보험계약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제시하여 줄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따라서 구체적인 경우에 대한 기준을 구하기 위하여 분쟁사 례의 유형적 분석을 통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함.